정보시스템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22. 12. 28.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정보시스템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하도급법」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정보시스템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정보시스템 공급·개발 및 구축분야)

1. 발 주 자:

2. 하도급 계약명 :

3.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 개발하는 정보시스템 :

- 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소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현금
중도금 (지급회수: 회)	%			현금 %, 어음 %
잔 금	%			현금 %, 어음 %
합계	100.0%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 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 6. 계약이행보증금 : 원

※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원

8. 중간보고일 : 년 월 일

- 9. 지연이자율
- 가. 지연이자요율(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연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10.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1,000)
- 11.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2. 개발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의 양도
- ◇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 ◇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경우에 대상 권리 및 내용 : (별지로 정할 수 있음)
- 1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적용함:()【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 중 일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지급기일·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계획서, 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 개별 약정서(협정사항, 특약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개발 및 구축계획서

3. 산출내역서

4. 비밀유지계약서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6.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7.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정보시스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구축(이하 '개발 등'이라 한다)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주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2. "선급금"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 3.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을 말한다.
- 5.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6.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이란 정보시스템을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다.

제4조(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와 추완 등) 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제 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내용증명우편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⑥ 제3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

제1절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

제5조(정보제공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 제출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받은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가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면 교부가 늦어져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⑦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 ⑧ 원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부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를 수정한다.

제6조(정보시스템의 개발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의 실시여부·일정·횟수·시간등을 정한다. 다만,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개발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 ⑤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위법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⑥ 원사업자가 위법한 지시를 계속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법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관리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범위는 이 계약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품질관리의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에 명시한다.

제8조(수급사업자의 중간보고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원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해 중간보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중간보고일을 변경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보고 외에 수급사업자에게 개발 등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보고를 요구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추가보고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내용이 이 계약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시정요구가 부당하거나 이 계약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부자재 등의 양도·대여 등)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함에 있어 품질유지·개선 및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원사업자가 원부자재 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 등을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에 그 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해당 원부자재 등을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아니하다.
- 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 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 ⑥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 등 중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완료한

후 남은 원부자재 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식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그 밖에 지식재산권 및 기술·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한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한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이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11조(추가작업)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추가작업'이라고 한다)에 원사업자는 추가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작업의 위탁연월일, 내용, 계약금액 및 제작조건 등이 기재된 추가작업서를 발급한다.
- ③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추가작업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중지등)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개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지된 기간은 전문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②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제13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1. 하수급업자
 -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내용
 -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 4.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 ⑤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안전 등

제14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② 원사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의 제공 등 지원
 -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사업자 근로자 등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도급하는 원사업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 거하는 작업
 -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
- ⑥ 원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이 하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른다.
- ⑦ 원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 ⑨ 수급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이 하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른다.
- ⑪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 2.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이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제15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근로자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6조(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중단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이 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 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또는 6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종료되는 경우에 종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18조(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유지의무를 다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안정법」,사회보험법령 그 밖에 법령상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한다.다만,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도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시설물·설비·기계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보고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협조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 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 이라 한다)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ㆍ명령

-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 3. 그 밖에 이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⑥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⑦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사업자가 현장대리인등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7항 단서 및 수급사업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그 지시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편의시설 등의 사용에 있어 차별금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이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차별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안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정보시스템의 납품 및 검사

제20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정보시스템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구축하며, 원 사업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납품 및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납품 및 구축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개발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개발 등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④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3항에 따른 개발 등의 기간이 단축된 경우, 개발 등의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납기까지 납품 및 구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및 구축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납품 및 구축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납품 등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 및 구축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 및 구축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정보시스템가 수 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 당한다.
 - 4. 수급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다시 납품 및 구축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검사 및 이의신청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등의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 ②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검사에 있어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결과통지기한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협력을 요청한 경우에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그 협력을 지연한 때에 그 지연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에 있어 산업하지 아니하다.
- ⑥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3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 ② 제22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4조(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완료를 통보받은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반품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원부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반품하는 행위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6.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7. 기술자료의 반환 폐기 방법 및 일자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다.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26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 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 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27조(기술지원 및 교육)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육의 실시 여부・일정・횟수・시간・비용 등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1.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 2. 교육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닌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 ③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의 사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지원의 일정, 횟수, 시간, 비용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의 기간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기술지원에 대한 기간·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 으로 갖는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된 정보시스템 중 수급사업자가 저작권을 갖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9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 개 강요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하다.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물품 등이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개시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9.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 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 제31조(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변경,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완료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2조(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3.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업무를 축소하 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혐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하다.
-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의2(하도급대금의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한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을 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표준 연동 계약서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의 명칭
 - 2. 하도급대금 연동의 주요 원재료 또는 원재료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4.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 지표 및 산식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첨】 표준 미연동 계약서로 하도급 대금 미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⑦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제4항에 따른 미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3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 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34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개발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 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 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④ 발주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3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개발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완료에 따라 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제1항에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 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

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정이 소멸한 때에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1.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⑧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수급사업자가 작업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이내에 통보한다.
- ⑩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는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로 할 수 있다.

제3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다.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 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2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 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공한다.
-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38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개별약정 및 부당특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다.

- ②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 는 손해배상책임
-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 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6.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8.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같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 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③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2.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3.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1조(계약 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다.
 -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 2. 하도급대금
 - 3. 위탁일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 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다.

제43조(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한 행위
-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44조(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근로자 채용 제한) 수급사업자의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중 이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정보시스템의개발 등의 업무에 국한한다)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다.

제45조(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중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자재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취지와 사유를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보급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6조(계약이행 보중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보증서 발급비용 등
- 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1항 단서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하도급대금지급 보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전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 이 경우에 보증방법은 제45조 제1 항을 준용한다.

제48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원사업자가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3 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가 제2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25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25조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한 정보시스템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판매·제공 규모(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수급사 업자가 제조하거나 할 수 있었던 정보시스템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정보시스템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의 규모를 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 2. 정보시스템의 판매·제공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하거나 할 수 있었던 정보시스템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정보시스템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 ② 제25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제25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 및 구축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 1. 태풍, 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납품기한 내에 정보시스템을 납품 및 구축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정보시스템을 납품 및 구축한 경우 : 구축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50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 또는 제45조 제1 항 각호에서 정한 증서를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날부터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수급사업자의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 ③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 1.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수급사업자
 -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원사업자
- ⑤ 수급사업자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⑥ 원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6.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6.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수행 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 ⑤ 제1항 제6호에 의한 해제·해지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행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다.
-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3. 원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원부자재 등 중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기성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 외한 잔여 원부자재 등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2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 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제기한다.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별첚】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이ㄷ그	원 도 급	片계 약 명(名)	
원 도 급 계약사항	최 초	계 약 금 액	
7117/18	계 으	후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 으	· 기 간	
아 エ ᆸ 계약사항	원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계크시티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구급사업자	주 소	

-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 5. 직불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 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 」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 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화번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사업자(법인)번호: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별첚】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 명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위의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의 변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항목	변경전 계약내용	변경후 계약내용		

※ 이 양식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에 줄을 늘리거나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제3조(수탁업무량 중가에 따른 계약기간 및 대금의 조정) 제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긴급발주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변경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변경한 내용이 하도급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변경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문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내용은 그 서면합의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상기의 내용으로 변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 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재료" 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 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 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5. "조정 주기" 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 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2】「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 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 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770	대상	원재료	L 가격	하도급단	· - - - - - - - - - - - - - - - - - - -	조정대금	원사업자등	수급시업자등
조정일	원재료	기준시 점	비교시 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반영일	확인	확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서명 · 기명날인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 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 혐의 개요: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 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